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0회 임시회(2023. 2. 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의회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23-10
----------	-------

2023. 2. 9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안 자 : 차해영 의원 외 12인
- 나. 제 안 일 : 2023. 2. 1.
- 다. 회 부 일 : 2023. 2. 6.

2. 제안이유

구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. 이에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토론회 등 운영원칙, 신청 및 승인, 지원 및 관리 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진행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라. 결과의 반영 및 실비보상 (안 제8조, 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기타
 - 입법예고 : 2023. 2. 1.~ 2. 5. 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배경

-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좀 더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됨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2조 정의는 “토론회” 및 “현안사항”의 범위 및 대상을 규정하였으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」 제55조에 따른 공청회와는 구별됨.
-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의 운영원칙과 신청 등은 의장이 다양한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고, 위원회 및 의원이 토론회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승인 관련 일정 등에 대하여 기한을 정함.
- 안 제9조 실비보상은 토론회 등의 발표자, 토론자, 전문가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다. 종합의견

- 현재 마포구의회는 구민의 의견청취 수단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고, 토론회는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, 지난 8대까지는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, 9대 개원 이후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의정활동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2건의 토론회 개최 실적이 있음.
- 이 같은 토론회 개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례 제정으로 토론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의회 위원회

및 의원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토론회 개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- 향후, 토론회 등의 제도화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살려 활성화 방안을 연간단위로 계획함이 바람직해 보이고, 이에 따른 토론회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아울러, 토론회 개최가 특정 분야 및 위원회, 의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, 다양한 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사무국에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[관 계 법 령]

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